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 도로교통법령상 PM 관련 개정 주요 내용(5.13. 시행)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의무화(법 제43조 등)

나. 처벌 규정 추가 신설 및 처벌 수준 상향(법 제156조, 제160조 등)

구 분	내용	시행령 개정 사항
범칙금	▶ 무면허운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法 제156조 제13호 신설)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10만원 (신설)
	▶ 과로·약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10만원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2만원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1만원 (신설)
	▶ 승차정원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4만원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강화	· 단순음주 : 3만원 → 10만원 (상향) · 음주측정불응 : 10만원 → 13만원 (상향)
과태료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法 제160조 제2항제9호 신설)	처벌조항 없음 → 과태료 10만원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法 제160조제2항 제3호 개정)	처벌조항 없음 → 과태료 2만원 (신설)

참고 1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란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PM과 해당하지 않는 PM

- ▶ 전동킥보드
- ▶ 전동이륜평행차
- ▶ 스톱 스톱 방식(페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PM으로 인정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PM에 해당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기자전거	④전동 외륜/이륜보드	⑤전동 스케이틀보드	
					

※ 현재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 방식)의 경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로 분류

참고 2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 아래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음

주·정차 가이드라인

- 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②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③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④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⑤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⑥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⑦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⑧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⑨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⑩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⑪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⑫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⑬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



참고 3 카드뉴스



참고 4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분	구 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17371호)	再 개정 도로교통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20. 12. 10.이전	'20. 12. 10.	'21. 5. 13.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 (30만원 ↓)	×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	
	처벌	×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 (오토바이용 안전모)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 범칙금)	×	○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작동	○	○	
	처벌	○ (20만원 ↓ 범칙금)	×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	○	
처벌	○ (약물: 3년 ↓ 1천만원 ↓, 과로: 30만원 ↓)	×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사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년 ↓ 500만원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10만원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만원

참고 5 관련 법규

① 「도로교통법」

○ 제2조(정의)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5.13 시행)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등 범칙금 부과